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	보도참고자료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보도일시	2021. 10. 11.(월)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 전산정보관리관 홈택스1담당관

담당 과장	강상식 과 장	044) 204-3201
	나향미 과 장	044) 204-2501
담 당 자	강신웅 사무관	044) 204-3212
	김희재 사무관	044) 204-2512

배포 일자: 2021년 10월 11일

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하는 달입니다.

-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운 개인사업자 162만 명에 대해 예정고지 제외 -

□ **(신고개요) 법인**사업자 **56만 명**은 **10월 25일(월)까지** 2021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21년 4월부터 적용)

□ **(세정지원)**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이 큰 **개인사업자**의 **납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0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직권 제외**(162만 명)합니다.

○ ❶**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개인**사업자(26만 명)[1]와 ❷**영세 자영업자**(136만 명)[2]가 **대상**으로 **10월 예정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22년 1월에 하반기 실적을 한번에 확정신고·납부하면 됩니다.

1)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지자체가 시행한 방역조치 기준(중기부 수보)

2) 성실신고 확인대상 기준 미만(도소매 등 15억원, 제조·음식 등 7.5억원, 서비스 등 5억원)

○ 그 밖에 피해 사업자도 **신청**시 **납부유예**를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 **(사전안내)**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안내자료***를 **최대한 제공**합니다.

* ('20년 2기 예정) 59종, 16만 명 → ('21년 2기 예정) 59종, 18만 명(12.5%↑)

□ **(신고검증)** 신고 후에는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신고자**에 대해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니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1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는 10월 25일까지

□ **(신고개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21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0월 25일(월)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참고 1,2)

○ 다만,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정고지제도**가 **신설**('21년 4월) 되어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부가법§48③)

○ 따라서, 이번 **신고의무 대상자**는 **56만 명**으로, '20년 2기 예정신고(101만 명) 보다 약 **45만 명 감소**하였습니다.

□ **(예정고지) 개인 일반**과세자(64만 명)*와 **소규모 법인**사업자(17만 명) **총 81만 명**은 직전 과세기간('21. 1. 1.~'21. 6. 30.)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30만 원 미만 제외)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체 고지대상자 226만 명 중 직권 제외 대상 162만 명을 제외한 인원임

□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총 28종)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참고 3)

○ 「**무실적자**」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로 간편신고 가능합니다.(참고 4)

* 홈택스 전자신고 가능 시간: 10. 1.~ 10. 25. 매일 06:00~24:00

□ **(전자납부)**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 **국세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를 이용해 이체하거나 **직접** 세무서 **무인수납창구**(신용카드) 또는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코로나19 피해 사업자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 실시

1 개인 일반과세자 예정고지 직권 제외

□ **(예정고지 제외)**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의 납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직권**으로 **예정고지**를 **제외**합니다.(162만 명)

* '21년 제10차 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21. 9. 28.)

○ **(지원 대상)** ❶**집합금지·영업제한** 사업자와 ❷**영세 자영업자**

> ❶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26만 명)
>
>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사업자 기준(중기부 수보)
>
> ❷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상 어려움이 큰 일정규모 미만 **영세 자영업자***(136만 명)
>
> * **성실신고 확인대상** 기준, 도소매업 등 15억 원, 제조·음식·숙박업 등 7.5억 원, 서비스업 등 5억 원 **미만**(단, 부동산임대·전문직 제외)

○ 예정고지가 제외된 사업자는 **10월에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홈택스*에서 조회 확인('세정지원' 표시)이 가능하며, '21년 7~12월 실적을 **'22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 조회(참고5)

- 다만, 세정지원 대상자가 **일시 납부 부담**으로 인해 예정고지를 당초대로 원하는 경우, 세무서에 **요청***(전화)하면 추가 **발송**합니다.

* 고지서 송달 일정에 따라 납부기한 선택(10.25./10.31./11.30./12.31. 중 택1)

□ **(예정고지 징수유예 신청)** 그 밖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도 예정고지세액을 기한내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적극 승인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2 중소기업·코로나19 피해 기업 등에 환급금 조기지급 실시

□ **(환급금 조기지급)**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원활히** 하고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혁신기업, 재해·재난 피해기업 등을 대상으로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

중소 영세	① 직전연도 매출액 1,000억 원 이하 &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② 직전연도 매출액 10억 원 이하 영세사업자(3년 이상 계속사업 여부 불문)
혁신 지원	③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 (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조) ④ 스타트업기업, 혁신중소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일자리창출중소기업, 유턴기업 ⑤ 신산업 성장지원 중소기업(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⑥ 한국판 뉴딜 관련기업
피해 기업	⑦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⑧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및 직접 피해 사업자

○ 지원대상 **중소기업·모범납세자** 등이 10월 20일(수)까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하여 **'21. 10. 29.(금)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 법정지급기한인 **'21. 11. 9.보다 11일 앞당겨** 지급

3 그 밖에 피해사업자도 신청시 납세유예 적극 실시

□ **(납세유예)** 재해, 구조조정, 급격한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참고6)

○ **(신청방법)**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온라인*** 또는 **우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온라인 신청방법)** ①홈택스 접속 → ②신청/제출 → ③일반세무서류 신청 → ④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징수유예' 검색 → ⑤'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 영세납세자 및 중소기업의 경우, **납세담보 면제금액**을 **1억 원**으로 **상향**

3. 법인사업자 맞춤형 안내를 통한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

□ **(신고도움서비스)** 사업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합니다.

* 개별분석자료, 기본사항, 과거신고내역, 세법개정, 세법해석사례, 대법원 주요 판례

□ **(공통 도움자료) 모든 사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한 자료*와 **동일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안내합니다.

* 최근 2년 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비중, 면세매출 비중, 신고 변동 추세선 · 원 그래프 등 시각화 자료

□ **(개별 도움자료)** 빅데이터, 외부기관 과세자료, 과세기반(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을 분석하여,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를 **18만 개** 법인사업자에게 추가 **제공**합니다.(참고7)

* ('20년 2기 예정) 59종, 16만 명 → ('21년 2기 예정) **59종, 18만 명(12.5%↑)**

| 업종별·유형별 주요 안내 항목 |

업종별	• (전문직) 세무대리인 불복수임료, 관세사 대행용역 성실신고 안내 • (부동산) 임대차 개시자료, 법인결산서 상 임대료 계상액 매출누락 • (서비스) 자연장지 운영(수목장) 관련 성실신고 안내, 폐기물 처리업체 실적 • (건설업) 오피스텔 주거 공급분 신고 유의사항, 도시가스 안전검사 실적 • (도소매) 재활용폐자원 부당공제 혐의분석 자료
유형별	• (플랫폼 거래) 배달·숙박 등 앱(app) 거래를 통한 매출액 성실신고 안내 • (비대면 서비스) SNS마켓 사업자, 식료품 새벽배송 관련 가공식품제조업 • (지역화폐) 지역화폐 결제대행사를 통한 가맹점 매출자료 성실신고 안내

□ **(조회방법)** 홈택스 **접속 시** 알림창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으므로, (참고8)

* (접근경로) [납세자용] 홈택스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세무대리인용] 홈택스 〉 세무대리인 〉 수임납세자 정보조회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 신고 전에 「신고도움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한 후, 도움자료를 반영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납세자 맞춤형 홈택스 개선으로 신고편의 제고

□ **(홈택스 개선)** 홈택스 신고화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신고 초기화면을 납세자 맞춤형으로 **개선***하여 **편의**를 **제공**합니다.

* 화면·글자 크기 확대, 탭방식 메뉴 구조, 신고특성을 고려한 바로가기 등

| 부가가치세 신고 초기화면 개선('21.10.14. 예정) |



□ **(세무알리미 안내)**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여부'**와 **'예정신고의무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홈택스 **「나의 세무알리미」**를 통해 세무 일정을 **안내**합니다.

| 나의 세무알리미 안내 |



□ **(대화형 신고서비스 도입) 조기환급**(시설투자에 한함) 신고서 작성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세법용어를 사용하여 **「묻고 답하는 방식」**의 **신고서비스**를 **제공**합니다.('21.9월부터)

* (경로) 부가가치세 홈택스 신고화면 > 조기환급신고(월별, 대화형 방식) 선택

5.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신고 후 검증 강화 추진

□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특히, 신고내용확인과 세무조사의 연계를 강화하여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철저히 검증**할 계획입니다.

| '21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확인 주요 추진현황 |

분류	주요 확인유형(예시)	내용
매출 항목	◦ 앱(app) 거래(배달·숙박) 매출누락 ◦ 기타 현금매출 등 누락	⇒ 결제대행 사전안내 자료 반영 여부 ⇒ 인테리어, 전기업자, 농기계대리점 등
매입 항목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매입세액 ◦ 오피스텔 등 면세전용 혐의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적정여부 ◦ 의제매입세액 부당 공제 ◦ 업무무관 매입세액 부당 공제	⇒ 불공제 대상 차량 매입자 추출 ⇒ 오피스텔 등 거주 신고 확인 자료 ⇒ 과·면세 매출에 따른 불공제 비율 저조 ⇒ 공제한도 초과 사업자 추출 ⇒ 캠핑카,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매입
공제 항목	◦ 신용카드발행세액 공제 부적정 ◦ 부가가치세 부당 감면	⇒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 초과자 추출 ⇒ 감면배제업종(임대) 사업자 감면 신청

※ 단, 업종별 기준금액 미만 **소규모·소기업**, 재난·재해 피해 **세정지원 사업자**, **매출이 급감한 차상위 자영업자**, 일자리창출기업 등은 **선정 제외**

○ 또한,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철저히 **검증**합니다.

□ 사업자분들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임을 인식하고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참고자료

1. 부가가치세 제도 개요 ····· 9
2.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방법 안내 ····· 10
3.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 제공 항목 및 일정 ····· 12
4. 모바일 간편신고 방법(무실적자) ····· 13
5. 홈택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 조회 ····· 14
6. 경영 어려움 · 재난피해 사업자 세정지원 ····· 15
7.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도움자료(예시) ····· 16
8.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 18
9.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안내문 ····· 24
10.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유형별 안내문
10-1. 예정고지 대상자 안내문 ····· 26
10-2. 예정고지 제외자 안내문 ····· 27
11. 개인사업자 예정고지 제외 세정지원 안내문 ····· 28

참고 1 부가가치세 제도 개요

1 계속사업자

○ 일반과세자(법인·개인일반 사업자)

- 일반적인 경우 법인*은 **1년에 4회**, 개인은 **2회** 신고

  * 소규모 법인사업자(1억 5천만원 미만)는 '21년 4월부터 **예정고지** 제도 시행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4.1.~6.30.	7.1.~7.25.	법인사업자
		1.1.~6.30.	7.1.~7.25.	개인 일반사업자
제2기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0.1.~12.31.	다음해 1.1.~1.25.	법인사업자
		7.1.~12.31.	다음해 1.1.~1.25.	개인 일반사업자

-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납부**(4월, 10월 예정신고 의무 없음)

  *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30만 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 제외

-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 **예정신고** 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예정고지세액은 **결정취소**

  * 휴업 등으로 '21년 7~9월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21년 1~6월)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간이과세자

- (과세기간) **1.1. ~ 12.31.까지 1년**
- (신고・납부 기간) **다음해 1.1. ~ 1.25.**까지 신고・납부
-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1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부과세액**(7월)으로 고지서에 의해 납부 (고지세액 30만 원 미만, 유형전환자 **제외**)

2 신규사업자

- (과세기간)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 계속사업자와 동일

3 폐업자

- (과세기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참고 2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방법 안내

1. 부가가치세 신고

구 분	주 요 내 용
전자신고 (PC)	○ 대상자: 모든 사업자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회원 가입 - 처음 이용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회원가입 필요 · (개인) 공동인증서(주민등록번호 발급), 본인명의 휴대전화, 본인명의 신용카드 번호 중 하나 선택 · (법인) 공동인증서(사업자등록번호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중 하나 선택 ○ 접근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회원 접속→'신고/납부'→'세금신고-부가가치세' 메뉴 선택 ○ 이용시간: 매일 06:00~24:00(작성 연습은 24시간 가능) ※ (전자신고 장점)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매입 등 28가지 항목을 조회할 수 있음 ○ 전자 신고요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참조 ※ (매뉴얼)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 ※ (동영상)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동영상자료실
모바일 신 고 (스마트폰)	○ 대상자: 무실적자 ○ 접근방법: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 ※ 회원 접속 후 '신고/납부'→'부가가치세 간편신고' 선택 ○ 모바일 신고 요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참조 ※ (매뉴얼)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 ※ (동영상)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동영상자료실
우편신고 · 방문신고	○ 이용시간: 2021. 10. 25.(월) 18:00까지 ○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

2. 부가가치세 납부

구 분	주 요 내 용
홈택스 (PC,모바일)	○ 국세청 홈택스 납부(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민간인증서) 접속)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선택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자진납부' 선택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 *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 ○ 페이코, 앱카드*, 삼성·카카오·네이버페이 이용자는 간편결제로 납부 가능 * 6개 카드사(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 납부시간: 07:00 ~ 23:30(연중 무휴)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 금융결제원 사이트 납부(www.giro.or.kr, www.cardrotax.kr) ○ 공인인증서로 접속 후 기본정보(납세자 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를 조회 또는 입력한 후 납부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 납부시간: 00:30 ~ 23:30(연중 무휴)
금융기관 (수납창구, CD/ATM, 인터넷뱅킹 등)	○ (수납창구) 현금,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CD/ATM) 계좌이체, 신용카드(분할납부불가), 가상계좌 납부 ○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ARS)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공과금수납기)* 계좌이체 납부 * 금융기관에서 공과금 납부 전용을 위해 설치된 단말기 ○ 납부시간: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세무서 (무인수납 창구 등)	○ (무인수납창구)* 신용카드 납부 * 신용카드수납기로 납세자가 직접 이용 ○ (현금수납창구)* 현금 납부 * 수납집중기간(신고기간 종료 5일 전부터 종료일까지, 매월 말일) 등에만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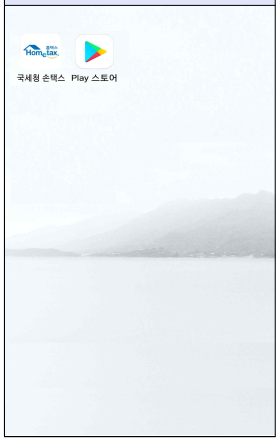
참고 3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 제공 항목 및 일정

No	구분	제공 항목(총28개)	제공일정	비고
1	매출	전자세금계산서(거래처별 명세 포함) 매출 합계	21.10.14.	
2		신용카드 매출	21.10.14.	
3		현금영수증 매출	21.10.1.	
4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금액	21.10.15.	
5		수출실적 내역(수출신고번호, 선적일, 수출액, 환율)	21.10.11.	
6	매입	전자세금계산서(거래처별 명세 포함) 매입 합계	21.10.14.	
7		수출 중소법인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세액	21.10.14.	
8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21.10.14.	
9		화물운전자복지카드 매입	21.10.1.	
10		현금영수증 매입	21.10.1.	
11		면세농산물등 매입가액(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21.10.14.	
12	공제	직전기 재고매입세액	21.10.1.	
13		재고납부세액	-	확정
14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기공제세액	21.10.1.	
15		일반과세자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	확정
16		일반과세자 예정고지세액	-	확정
17		간이과세자 예정부과세액	-	확정
18		간이과세자 예정신고세액	-	확정
19		철스크랩 등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	21.10.15.	
20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상 계산서 금액	21.10.14.	
21		신용카드사를 통한 대리납부 관련 세액공제금액	21.10.11.	
22	기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직전기 임차인 명세	21.10.1.	
23		수정신고.경정청구시 당초 부가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	신고마감후	
24		전자계산서 매출 합계, 거래처별 명세	21.10.14.	
25		전자계산서 매입 합계, 거래처별 명세	21.10.14.	
26		국고입금세액 정보(세무대리인)	21.10.15.	
27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발급.수취.전송 관련 가산세 내역	21.10.15.	
28		음식·숙박업 직전기 사업장현황명세서	-	확정

참고 4 모바일 간편신고 이용방법 (무실적자)

○ 대상 : 무실적 법인사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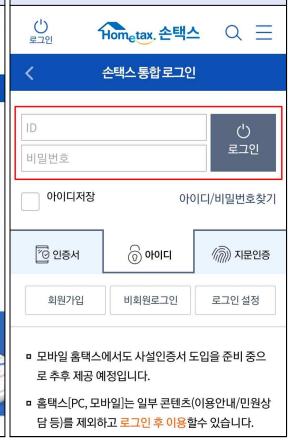
① 모바일홈택스 접속



② 로그인 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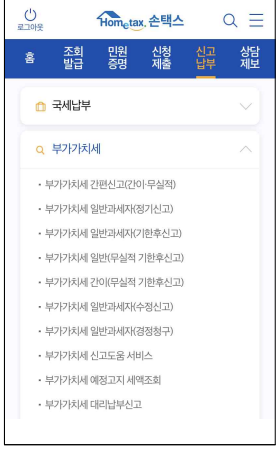


③ 아이디,비밀번호 입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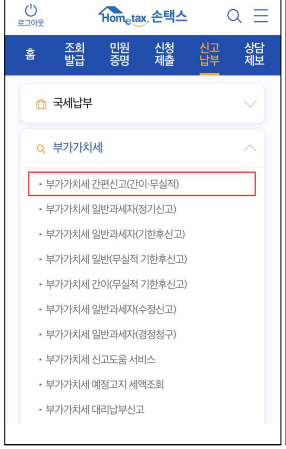


- 모바일 홈택스에서도 사설인증서 도입을 준비 중으로 추후 제공 예정입니다.
- 홈택스(PC, 모바일)는 일부 콘텐츠(이용안내/민원상담 등)를 제외하고 로그인 후 이용할수 있습니다.

④ 신고/납부 터치



⑤ 부가가치세 간편신고 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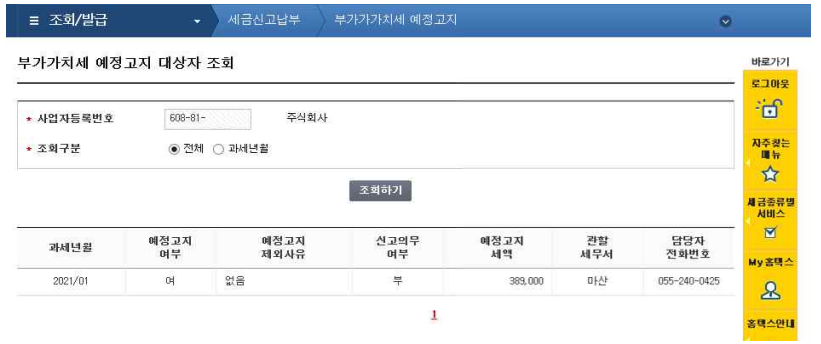
⑥ 무실적신고



참고 5 홈택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 조회

[납세자 본인]

※ (경로) 홈택스 ID·PW 접속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 조회**」 화면에서 **납세자**가 **직접 조회**



[세무대리인]

※ (경로) 홈택스 세무대리인 접속 > 세무대리/납세관리 > 세무대리인 공통 - '**부가세 수임납세자 예정고지 조회**' 화면에서 **전체** 수임납세자 **일괄 조회** 가능



참고 6 경영 어려움 · 재난피해 사업자 세정지원

□ 주요 내용

○ **지역산업 구조조정, 재난·재해**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신청시 **납세유예 등 세정지원**

□ 지원 대상

○ **(경영 어려움) 고용위기지역 ·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 소재한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실시(중소기업 최대 2년 연장)

구 분	지정일	지정기간 만료일	지정 지역	사유
고용위기지역 (고용노동부 고시)	'18.4.5.	'21.12.31. (1년 연장)	(경남)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북) 군산시	조선업 불황
	'18.5.4.		(전남) 영암군, 목포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산업통상자원부)	'18.4.5.	'22. 4. 4.	(전북) 군산시	
	'18.5.29.	'23.5.28. (2년 연장)	(경남)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남) 해남군. 영암군. 목포시	

○ **(재난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피해지역 소재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 실시(중소기업 최대 2년 연장)

선포일	재난 지역	사유
'18.09.17.	(전남) 완도 보길면, (경남) 함양읍. 병곡면 (경기) 연천 신서면. 중면. 왕징면. 장남면	태풍
'18.10.24.	(경북) 영덕군, 경주시 외동. 양북면, (경남) 거제시 일운. 납부면 (전남) 고흥군 동일면, 완도군 소안면. 청산면	태풍
'19.04.06.	(강원) 강릉시. 속초시. 동해시. 고성군. 인제군	산불
'19.09.20.	(인천) 강화군, (전남) 신안군 흑산면	태풍
'19.10.10.	(강원) 삼척시, (경북) 울진군. 영덕군	산불
'19.10.17.	(전남) 해남군, (경북) 경주시. 성주군, (전남) 진도군 의신면 (강원) 강릉시 강동면. 옥계면. 사천면, 동해시 망상동	태풍
'20.03.15.	(대구) 대구시,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	질병

○ **(추가 연장)**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 (최초 연장 3개월 이후 1개월씩)에서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추가 연장**

참고 7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도움자료 [예시]

사업자가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	
매출	○ 비사업자로부터 받은 현금 또는 계좌이체 금액을 신고 누락
	○ 직원이나 친척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입금받은 금액을 신고 누락
	○ 과·면세 겸업자의 과세 매출분을 면세 매출로 잘못 신고
	○ 수정 세금계산서 잘못 작성하는 사례
	○ 수출통관내역,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발급 금액을 신고 누락
	○ 영세율 매출이 발생한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를 미제출
매입	○ 면세·간이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자료를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 사업과 관련없이 사용한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 거래처 접대비로 지출한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유지 비용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면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누락
	○ 토지측량비 등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불공제대상)을 잘못 공제
	○ 사업용 신용카드와 그 밖의 신용카드를 중복으로 잘못 공제
	○ 월별 조기환급 신고분을 정기 신고 시 중복으로 잘못 신고
	○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시 자주 발생하는 오류 안내
기타	○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용역 중 전문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영세율을 적용
	○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 사업자가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을 '지정은행에서 해당 사업자 명의로 국고에 입금한 세액' 보다 과다하게 공제
	○ 면세비율 증감에 따른 납부세액 재계산 안내

업종별 · 항목별 주요 안내자료	
건설업	○ 산재보험에 가입된 건설공사 현황자료 성실신고 안내
건설업	○ 한국감정원에서 수집한 아파트 시설공사 실적 자료
건설업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아파트 시설공사 자료
건설업	○ 오피스텔의 주거용 공급분 부가세 신고 유의사항 안내
전문서비스업	○ 관세사의 대행용역 과세매출 성실신고 안내
전문서비스업	○ 세무대리인 불복 수임료 성실신고 안내
임대업	○ 임차인 사업자등록 시 제출한 임대차 현황자료
제조업	○ 비대면 소비 증가 관련 가공식품 제조업 성실신고 안내
제조업	○ 철스크랩 매출 성실신고 안내
서비스업	○ 배달앱을 통한 매출액 성실신고 안내
서비스업	○ 자연장지(수목림 등) 과세거래 성실신고 안내
서비스업	○ 수의업 현금매출 관련 성실신고 안내
서비스업	○ SNS 마켓 등 성실신고 안내
서비스업	○ 한국전력공사에서 수집한 전기검사·점검 실적 자료
도.소매업	○ 재활용폐자원 부당공제 혐의 분석 자료 등 신고 안내
도.소매업	○ 장애인보장구 보조금 지급 내역 안내
도.소매업	○ 플랫폼 사업자에 지급한 수수료 안내
도.소매업	○ 제로페이(zeropay)를 통한 매출액(결재금액) 안내
도.소매업	○ 주유소 사업자 면세유 매출액 안내
공통	○ 전년 대비 매출 증가 업종 성실신고 안내
공통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 구입 내역
공통	○ 한국국토정보공사로부터 수취한 토지 관련 매입 내역
공통	○ 접대성·개인적 사용 등 불공제 대상 매입세액 성실신고 안내
공통	○ 수출통관 및 외환수취자료 안내
공통	○ 귀금속 등 기념품 취득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안내
공통	○ 기타 현금매출 신고내역이 없는 사업자 성실신고 안내
공통	○ 소송관련 업무무관 매입세금계산서 성실신고 안내
공통	○ 매입자납부특례 사업자 성실신고 안내

참고 8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 일반 접근경로 (납세자)

01. 홈택스 접속 후 '신고/납부' 클릭 - '세금신고'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클릭



02.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클릭



□ 일반 접근경로(세무대리인)

01. 홈택스 접속 후 세무대리인 → 수임납세자 정보조회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02. '과세기간' 선택 후 '세무대리인 일괄조회'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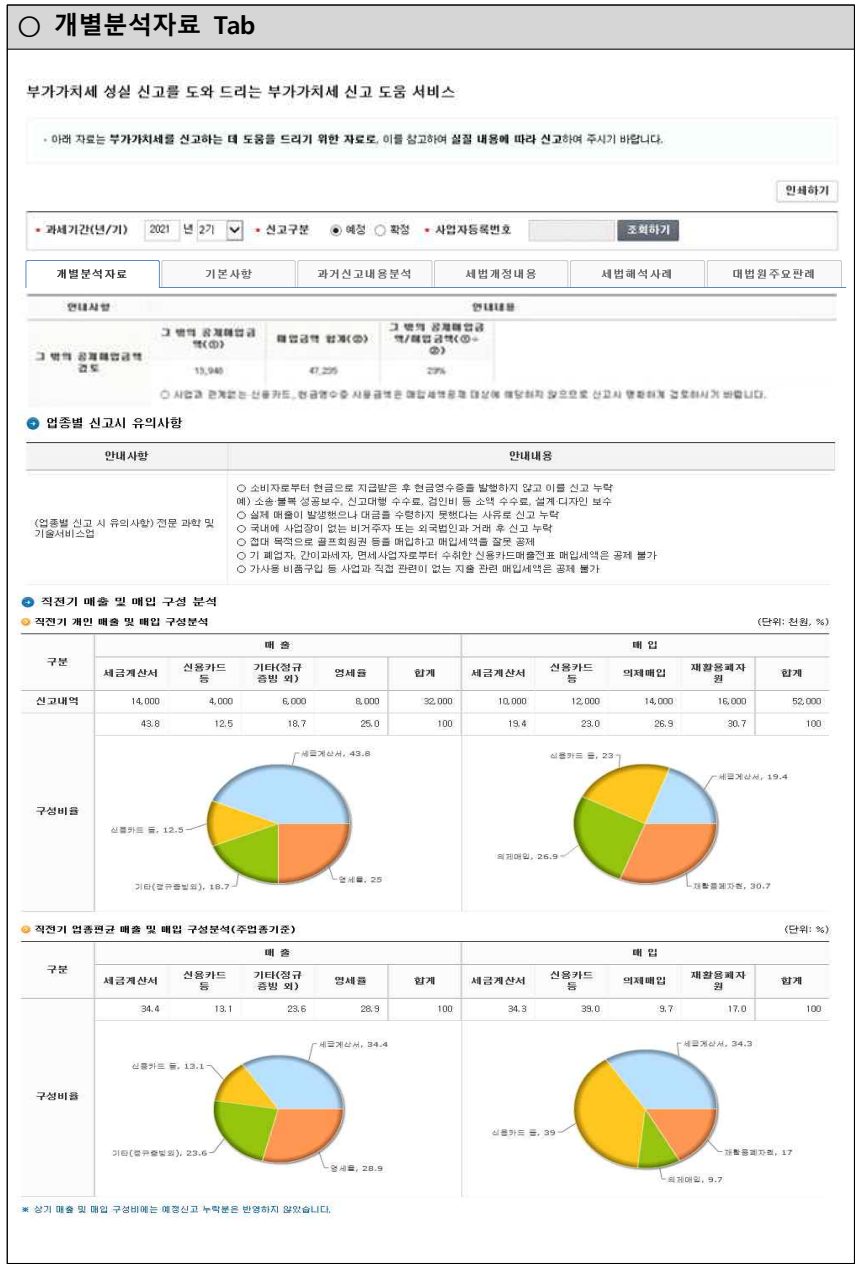


03. '개별분석자료 제공' 선택 후 조회하기 클릭하여 목록 확인



□ 화면 내용 (예시)

○ 개별분석자료 Tab



○ 기본사항 Tab



기본사항

신고안내 자료에 대한 문의	종로 세무서 부가가치세과 김타수 조사관 (☎ 02 -1234-5670)		
상호(법인명)	-	성명(대표자)	
업 태	도매 및 소매업	종 목	통신기기 소매업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체크리스트

	확인할 내용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및 종이세금계산서 발행분 확인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분 확인
	(현금매출) 계좌이체, 핀테크 결제 등으로 받은 결제대금 확인
	(영세율) 수출통관내역.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관련 매출 확인
	(첨부서류)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상 영세율 적용 위한 필수서류 준비
	(겸업) 과.면세 겸업사업자 과세매출 적정 확인
매입	(세금계산서) 면세.간이.폐업 사업자로부터 매입액은 공제 제외
	(신용카드) 사업 무관.개인적 사용.접대비 목적 사용액은 공제 제외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유지.임차 목적 매입액은 공제 제외
	(중복공제 검토) 매입세금계산서 대금결제를 신용카드로 한 경우
	(겸업) 과.면세 겸업사업자 공통매입세액 안분 적정 확인
	(공제 초과) 농.축.임.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초과 여부 확인

○ 세법개정내용 Tab



2021년 주요 세법령 개정사항

구 분	개정내용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	기준금액 8,000만원 미만으로 상향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제외)
간이과세자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 상향	기준금액 4,800만원 미만으로 상향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과	직전년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
일반과세자가 공제받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매입세액공제 대상	간이과세자 중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율 조정	일반·간이과세자 통합 1.0%('21.12.31.까지 1.3%)
간이과세자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배제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등 가산세 규정 보완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추가, 경정시 공제받은 세금계산서등 가산세 0.5%로 인하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산정방식 변경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매입액(공급대가)의 0.5%로 변경
간이과세자 예정부과기간 납부세액 신고사유 확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신고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간이과세자 확정신고시 제출서류 추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전자적 용역의 공급장소 명확화	전자적 용역의 경우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주소지·거주지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 추가	한국철도공사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추가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면세사업 목적으로 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건설용역)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환급 추정사유 보완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이후에 세금계산서 발급
소규모 법인사업자 예정고지 신설	직전기(6개월) 공급가액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

○ 세법해석사례 Tab



주요세법 해석사례 32건

업종	분 야	해석 사례
공통	과세대상	가상자산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45, 2021.03.02.)
공통	과세대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자(이하 "사업시행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64조에 따른 매도청구를 행사하여 사업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기준-2020-법령해석부가-0001, 2020.02.06)
공통	과세대상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고시하고 사업구역 내 건물을 매수할 때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가 아닌 건물 소유자와의 일반적인 협의에 따라 건물을 매수하고 소유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771, 2020.01.07)
건설업	과세대상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전체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공급받기로 시공사와 일괄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변경하기 위해 공급받는 용역은 주택건설 용역과 구분되는 별도의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따라 '주택건설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주택건설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4, 2019.01.15)
공통	사업자등록	개인이 기존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장에 노무를 출자함에 따라 공동사업장의 출자가액, 출자지분, 손익분배비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한 동업계약을 체결(변경)한 경우 해당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및 출자지분 변경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사전-2019-법령해석부가-0192, 2019.06.11)
공통	사업양도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여러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어느 하나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여러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부문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사전-2020-법령해석부가-0211, 2020.03.12)
부동산 임대업	사업양도	집합건물 내에 2개의 구분등기 된 상가를 소유한 자가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임차인이 퇴거하여 공실 상태인 하나의 상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사전-2020-법령해석부가-0953, 2020.11.04.)
부동산 임대업	사업양도	상가를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용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녀에게 해당 상가분양권을 증여하면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79, 2019.08.07)
상품 중개	영세율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인터넷 상의 오픈마켓을 통하여 상품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경우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상품중개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70, 2021.05.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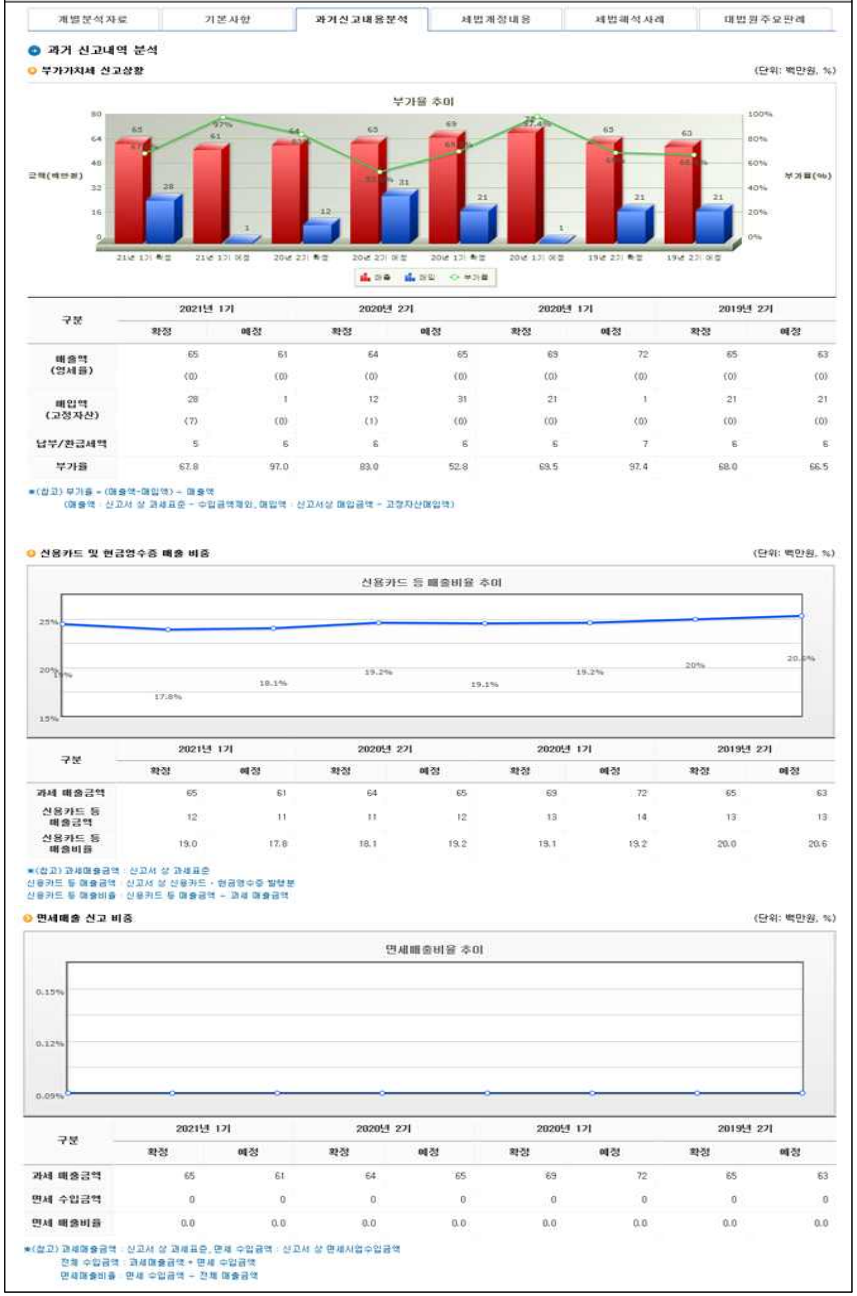
○ 대법원주요판례 Tab



부가가치세 관련 대법원 판결 주요 내용

원고	세목	판 시 사 항
조○숙 외 1 (2020두40914) 권○오 외 3 (2020두43289) 정○범 (2020두44749)	부가	• 공급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나 사실상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고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채○경 (2020두42637)	부가	• '다중주택'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용도변경의 허가 없이 '다가구주택'의 용도로 개조한 경우라도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구당 전용면적이 이닌 주택의 전체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주택법에 따른 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김○임 외 3 (2020두44725)	부가	• 공급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나 사실상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고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 오피스텔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조세심판원의 일부 결정만을 근거로 원고들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착오에 불과하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석○원 (2017두49157)	부가	• 원고는 A로부터 업무용 오피스텔의 분양권을 양수하면서,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A가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반납할 의무까지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으므로, 원고가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해제하자 원고로부터 A가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 과거 신고내용분석 Tab



참고 9 법인사업자 예정신고 안내문 (신규 사업자)

< 앞 면 >

소중 낸 세금
행복한 내일로 돌려받습니다.

국세청

2021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안내문을 수령하기 전에 이미 신고한 경우에는 폐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극복! 적극적인 세정지원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신고·납부기간
2021년 10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
※ 휴업중이거나 실적이 없어도 신고하셔야 합니다. (무실적 신고는 뒷면 '전자신고 방법' 참조)

과 세 기 간
2021년 7월 ~ 9월 까지의 사업 실적

신 고 방 법
전자신고 인터넷 또는 모바일 「홈택스」로 신고 (뒷면 '전자신고 방법' 참조)
우편신고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우편 발송

신 고 문 의
전자신고 국세상담센터 126 번 (1번 → 3번), 09:00 ~ 18:00
기타신고 아래 기재된 세무서 상담전화

세 정 지 원
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피해사업자가 기한연장 신청 시 **3개월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은 뒷면 참조

세 무 서 장 (관인생략)

< 뒷 면 >

01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방법

» 운영시간 • 10. 1. ~ 10. 25. (공휴일 포함) ⇒ 매일 06:00 ~ 24:00

» 신고방법 • 인터넷 「홈택스」 검색 또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앱」 실행
①로그인 ②신고/납부 ③부가가치세 ④일반과세자 정기신고
(단, 사업장현황명세서 제출 대상자(음식·숙박업 등), 재활용폐자원공제 신고자, 면세·영세율 해당 사업자는 모바일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 무실적 신고 • (모바일)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다운받아 간편 신고
※ 접근방법 : ①모바일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②신고/납부 ③부가가치세 ④부가가치세 간편신고 ⑤무실적 신고 ⑥신고서 제출 ⑦접수증 확인

02 부가가치세 납부 방법

» 홈택스·모바일 (이용시간)07:00~23:30 • 모바일 또는 PC로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고/납부 → 국세납부

» 신용카드 (이용시간)00:30~23:30 • 금융결제원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 로그인 이용
※ 로그인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결제수단 중 신용카드 선택
※ 카드로 납부 시 납부대행수수료(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가 발생

03 신고 전에 확인해 두면 편리한 사항

»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 • 홈택스 전자신고 화면에서 조회 가능한 주요 항목

주요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항목	제공 예정일
① 예정고지 · 예정신고미환급세액, 현금영수증 매출 · 매입, 확들운전자복지카드 매입	10. 1.
② 신용카드 매출, 사업용신용카드 매입	10. 14.
③ 전자(세금)계산서 매출 · 매입	10. 14.

» 부동산임대업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
2021년 간주임대료 (임대보증금 이자) 계산 시 적용되는 정기예금 이자율 1.2%

04 기한연장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에서 '납부기한' 또는 '신고기한' →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참고 10-1 법인사업자 예정고지 대상자 안내문 (홈택스 게시)

법인 부가가치세 예정고지('21.10월) 안내문

'21년 4월부터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신고부담 완화**를 위해 법인 **예정고지**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

종 전	변 경
10월 예정신고(7월~9월분)	10월 발송된 고지서로 납부만
다음해 1월 확정신고(10월~12월분)	다음해 1월 확정신고(7월~12월분)

- 10월에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해 1월 확정신고 시 기납부 세액으로 차감됩니다.
- **세액산출** 직전 과세기간('21년 1월~6월) 납부세액의 50%
- **예정신고** 예정고지 대상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으나 사업부진① 또는 조기환급② 신고 시에는 '21년 10월 25일까지 예정신고가 가능하고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 ① **사업부진** 예정신고기간('21년 7월~9월)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21년 1월~6월)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 ② **조기환급** 영세율 적용, 사업설비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 등으로 예정신고기간에 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 **홈택스 조회** 홈택스 로그인 〉「조회/발급」〉 세금신고납부 –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 조회' 화면에서 조회 가능

126 모든 국세상담은 국번없이 126번으로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상담받으세요

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

참고 10-2 법인사업자 예정고지 제외자 안내문 (홈택스 게시)

법인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도 안내문

'21년 4월부터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신고부담 완화**를 위해 법인 **예정고지**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은 예정신고(매년 4월·10월)하는 대신 **예정고지서에 의한 납부**로 대체됩니다.

• 다만, 귀 법인은 예정고지 대상이나 **징수할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므로 **예정고지 없이** '22년 1월 확정신고 시 **한번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종전	10월 예정신고(7월~9월분) 다음해 1월 확정신고(10월~12월분)	변경	다음해 1월 확정신고 시 7월~12월분을 한번에 신고

• **세액산출** **직전 과세기간**('21년 1월~6월) **납부세액**의 **50%**

• **예정신고** 예정고지 대상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으나 조기환급*** 신고 시에는 '21년 10월 25일까지 **예정신고**가 가능합니다.

* **조기환급** **영세율 적용, 사업설비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 등으로 예정신고기간에 **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 **홈택스 조회** 홈택스 로그인 〉「조회/발급」〉 세금신고납부 –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 조회'** 화면에서 **조회 가능**

126 모든 국세상담은 국번없이 126번으로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상담받으세요

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

참고 11 개인사업자 예정고지 제외 세정지원 안내문 (모바일)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 안내문('21.10월)

코로나19 극복!
적극적인 세정지원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예정고지 제외 안내

▶ 국세청에서는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이 큰 납세자에게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귀하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사업자 또는 **영세자영업자**에 **해당**되어 이번 10월 **부가세 예정고지**를 **직권**으로 **제외**하였습니다.

▶ 따라서, **10월 예정고지서는 발송되지 않으니**, '21.7월~12월 실적에 대해 **'22년 1월에 확정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사업자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된 **소상공인**

- **중기부**에서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으로 분류한 사업장

영세자영업자

▶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수입금액 미만** 사업자

- 도소매업 등 **15억원**, 제조·음식·숙박업 등 **7.5억원**, 서비스업 등 **5억원**

▶ 단, **부동산임대·전문직** 사업자는 **지원 제외**

세무서 상담전화 TEL :

세무서장